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408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51	맹성규 의원 등 14인	'25.04.09.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 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1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86	박용갑 의원 등 10인	'25.07.07.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 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1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98	김희정 의원 등 10인	'25.09.03.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5.11.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11.26)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0.)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어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양수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인가 전에 양도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은 운임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나.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

라.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요구 금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제1항제3호의6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제49조의13의 제목 중 “요금”을 “요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이하 “가맹수수료”라 한다)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1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제94조제1항제3호의6을 제3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6.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수수료의 수취·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1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 ⑩ (생 략) <u><신 설></u></p>	<p>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u> <u>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u> <u>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u> <u>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u> <u>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u> <u>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u> <u>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u> <u>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u> <u>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u> <u>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u> <u>요한 정보에 한정한다.</u></p>
<p>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 임·요금) ① ~ ⑥ (생 략) <u><신 설></u></p>	<p>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 임·요금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u> <u>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u> <u>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u> <u>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u> <u>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u> <u>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u> <u>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u></p>

4. · 5. (생략)

② ~ ⑤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